doTERRA Korea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도테라코리아(유)는 당사를 통하여 IPC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에 한하여 당사의 방침 및 절차와 서면으 로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방침 및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한 어떠한 홍보 및 판촉행위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판매(웹사이트) 사전 심의

- 1) 사전 심의 신청 시 안내 사항
 - ① 제출된 신청서는 도테라코리아 영업부에서 관련법률과 당사의 방침 및 절차에 근거하 여 심의 합니다.
 - ②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10일 이며, 사안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을 안내 드 립니다.
 - ③ 당사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기각 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④ 심의에 통과 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영업부에서 정기적으로 관련규정 위반내용을 확인 할 것이며, 위반내용 발견 시 시정요청이나 사이트폐쇄 등의 제제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 ⑤ 운영 중 웹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2) 사전 심의 신청 시 첨부 서류
 - ① 웹사이트 사전심의 신청서
 - ② 웹사이트 컨셉 및 웹사이트 운영 계획서
 - ③ 판매 제품 목록 및 가격 리스트
 - ④ 인터넷 포스팅 전 웹사이트 전체 화면 스크린카피

3) 접수 방법

- ① 이메일(krsales@doterra.com)
- ② 팩스 02-2137-5492
- ③ 비즈니스센터 접수

dōTERRA

2. 웹사이트 운영 시 유의 사항

- 1) 영업신고
 - ① 사업자등록증(업태: 전자상거래업)
 - ② 통신판매업 신고
 - ③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시에 해당)

2) 제품 판매 가격

-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IPC 주체는 반드시 IPC 가격(회원공급가)을 준수하여,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실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웹사이트 자체적으로 1+1, 10+1 등의 특별 추가 증정 프로모션이나 가격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온라인(웹사이트) 판매의 범위

- ① 도테라 제품만을 판매하기 위한 단독 웹사이트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타사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옥션 및 덤핑 판매 사이트(벼룩시장, 중고나라)에서의 판매는 불가합니다.
- ③ 네이버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카페 및 블로그, 샵N, 소셜사이트(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등) 등에서의 판매는 불가합니다.
- ④ 단독 웹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4) 필수 기재 사항(상단 우측에 게시)

① 상단에 로고 게시(doTERRA Independent Product Consultant 로고)



② 상단에 하단 문구 게시

"본 사이트는 도테라코리아(유)에 가입되어 있는 IPC(Independent Product Consultant), 회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미국 도테라홀딩스,엘엘씨 및 도테라코리아(유)와는 무관합니다."

5) 정보 공개 요구 및 제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회사에 답변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3. 상품의 홍보 및 표시 사항

dotfrra

1) 일반적 제한

IPC는 상품을 홍보 또는 판촉 함에 있어 해당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 회사가 공식 제작한 판매홍보물 등의 표시, 광고 된 사항에 한해서면 홍보 및 판촉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판매의 사전 심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미지를 포함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의학적 효능, 효과 표시, 광고 금지

IPC는 상품을 홍보, 판촉 함에 있어 해당 상품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질병 치유 등 의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안, 제조, 승인된 것으로 오인토록 설명, 표시, 광고 등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표시 광고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상품이 화장품 또는 일반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IPC는 웹사이트 운영 시 회사의 상품을 의약품과 비교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만약 이러란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IPC에게 있습니다.

3) 상품 포장의 수정

IPC는 상품의 포장, 라벨, 상품 소개 및 사용 방법 등을 무단으로 수정, 변경 할 수 없습니다. IPC는 회사가 권장하거나 회사에 의해 사전 승인된 상품 사용법 이외의 내용은 설명 할수 없으며, 판매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포장, 라벨 등의 수정, 소분하여 변경할 경우 모든 책임은 IPC에게 귀속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해당 IP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상호와 저작권 침해 금지

1) 판매 홍보물의 사용

IPC는 회사가 사업 기회, 상품 및 보상플랜의 홍보를 위해 제작하여 배포한 판매 홍보물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과 규정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IPC는 해당 판매홍보물은 사용이 허가된 국가에서만 해당 판매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C는 개별적으로 판매홍보물을 제작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상호의 사용과 저작권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IPC는 회사의 상표, 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을 허가되거나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판매홍보물 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3) 회사의 로고나 상호의 게시 금지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을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주택, 사무실, 점포 또는 기타 유형의 물체 전면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기타 건물에 사용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로고는 아래와 같으며

dōTFRRA

회사의 승인 없이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적 정보를 침해하여 다른 로고를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시] 도테라독립제품컨설턴트 000사무실, 도테라IPC 00000그룹 [사용 가능 로고] IPC 로고, 블랙, 라벤더, 화이트 3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dōTERRA dōTERRA

4) 회사 상호와 저작권 침해 자료의 배포/복제 금지 회사는 회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판매홍보물 또는 어떠한 매체 를 통하여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 복제 또는 금지합니다.

5) 피해

IPC는 승인되거나 회사의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호,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오용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IPC, 개인 또는 기타의 존재에 대하여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5. 검색엔진

- 1)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으며, 상위 노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예시. 네이버의 바로가기, 파워링크 등의 상위 노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특정질병, 질병 호전 및 질병과 연관된 키워드를 사용, 이를 웹사이트에 광고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검색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 ① 가격 위반 판매 시
- ② 허위·과대 광고 시
- ③ 회사 상호 사용과 저작권 침해 시
- ④ 기타
- ⑤ 처분
 - a 제품의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여, 보상플랜에서의 승급 등의 IPC 특권 중지
 - b 일정기간 동안 또는 IPC가 특정 조건 충족할 때까지 후원수당 또는 보너스 보류
 - c IPC 계약 해지
 - d 법률이 허용하는 벌금 또는 기타 위약금 부과
 - e 부득이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

dōTERRA°

- 7. 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 8. 화장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 9.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6, 7, 8 범위에 대한 법률 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에 관한 법률]

하작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u>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u>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하.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하.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dōTERRA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u>·광고 판리 가이드라인</u> 그고교청	취유교정
구분 질병진단, 치료,경감 처치,예방관	금지표현 ·아토피 ·여드름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허용표현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단, 효능·효과 입증*시). ·향균(인체세정용 제품에서 효능·효과 입증*시)
려 면	·심신피로 회복 ·향균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 바이러스	
피부개선 표현	·피부노화 관련 표현 ·셀룰라이트 관련 표현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피부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임신선, 튼살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제외). ·뾰루지를 개선한다.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이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에 도움을 준다(기능성화장품에 한함). ·안티에이징, 피부노화를 완화시킨다(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킨다(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한다(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피부 및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한다(촉촉함을 준다). ·피부리로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 ·피부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부드럽게 한다. ·피부 자극 및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 ·피부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피부에 수렴효과(피부의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진시킨다. ·교비에 수렴효과(피부의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진시킨다.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피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입술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한다. ·면도에 의한 피부 자극을 감소시킨다. ·면도 후 면도자국을 방지하여 피부를 가다듬는다. ·면도 후 이완된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dōTERRA®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표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예. 지속적 체중감량, 체형변화, 몸매 개선, 피하지 방 분해, 부분적인 군살을 관리하여 명품 보디라 인을 갖게 된다 등	
·색조 효과를 주며 윤곽을 선명하게 하여 아름답게 한다. 대부 결점을 감추고 색조 또는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 움을 더한다. 당이나 피지에 의한 색조 효과의 흐트러짐을 방지한다. 양학적인 특성 또는 색조 효과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이도록 한다.	다.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모발 등의 성장을 억제한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한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 예: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한다, 생리적으로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모발을 나게 한다 등	
·손톱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을 예방하여 건강 손발톱 관련 게 한다. 표현 ·손톱을 보호하고 색조 및 광택효과를 주어 아름다움을 한다. ·손톱 화장을 지운다.	
생리활성 관련 ·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 피부의 혈행을 개선한다(효능·효과 입증* 시).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예 :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종은 향기로 즐거운 기분을 갖도록 한다.	
· 피부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피부구성 물질(예: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 효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또는 활성화시킨다. 표현(기능성화장품에서 효능·효과 입증* 시)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 불특정인(不特定人)의 '인체 ○○세포 배양액' 기원. 다음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별표 5]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규정」[별표 5]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dōTERRA

화장품 관련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표현	
안전성 관련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6.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표시·광고의범위)

과다	∤광고	해당되	티는	경우
----	-----	-----	----	----

	과내광고 애당되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내시의 다그거나 기자다	가. 법 제 5 조 내지 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dotfrra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법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	

[식품위생법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 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3.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A.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B. 「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dōTFRRA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C.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14. 그밖에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u>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u>

- 1.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가공하지 않은 자연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 3.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용성

-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dōTERRA®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섭취량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